

『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세구 의원 외 4명

2. 제안이유

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 및 관련 조례 별도 제정에 따른 중복 조문 및 조항 삭제(안 제1조, 안 제5조~안 제9조)
-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(안 별표 1)
 - 읍·면·동 축종별 제한구역 추가
 - 「농지법」 제28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)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신설
 - 읍·면·동 축종별 제한구역 구분에 축종(말) 추가
 -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확대
 - 소(한우, 육우) : 250m 이내 → 500m 이내
 - 닭(육계)
 - 20,000마리 미만 : 250m 이내 → 700m 이내
 - 20,000마리 이상 ~ 50,000마리 미만 : 450m 이내 → 700m 이내
 - 50,000마리 이상 : 650m 이내 → 700m 이내

- 「하천법」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 → 1km 이내
-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조문 삭제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신설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농지법」, 「하천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10. 2. ~ 10. 10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농업진흥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여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